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이 희 춘 (보험개발원 특종보험팀장, 보험계리인, 이학박사)

1. 서론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는 오존층의 파괴와 엘니뇨 · 라니뇨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 10년간의 자연재해를 60년대와 비교해 보면 자연재해발생건수는 3배가 증가하였고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경제적 손실은 8배(보험손실은 14배)가 증가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심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2000년 한해 동안 자연재해로 모두 1만 7천명이 사망하고 380억 달러(약 45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인도 및 방글라데시아의 홍수로 1천2백명, 모잠비크의 홍수로 920명, 인도차이나의 홍수로 88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고 재산피해가 가장 컸던 재해는 2000년 9월에 발생한 일본의 도카이(東海)지방의 10억달러의 수해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양상이 다양화 · 대형화되어가는 가운데 2000년 1~2월중 30년만의 폭설로 약 7,96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최근 10년간('91~2000) 연평균 피해규모는 사망 · 실종이 142명, 재산피해는 약 5,96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연도별 피해현황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인명피해(명)	384	89	49
재산피해(억원)	1조 5,828	1조 2,197	6,455

'98~'99년도의 경우에는 전국에 걸친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등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대폭 경감되었다.

이처럼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발생요인은 크게 기상적인 요인과 지형적인 요인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상적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대륙의 남단에 위치한 반도국가로서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계절별 · 지역별로 기상조건의 편차가 극심하여 풍수해 유발가능성이 매우 큰 편이며 또한 대륙과 태평양을 지나는 몬순의 영향으로, 여름철인 6월과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발생, 연강수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지형적 요인으로 전국토의 70%가 산지이며 동고서저(동고서저)의 지형으로 대부분의 하천의 유로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한 특성을 갖고 있어 단기간의 집중호우에도 홍수가 발생하며 피복토가 취약하여 산사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다. 셋째, 인위적 요인으로 60년대 이후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도시화가 촉진되어 아스팔트 등 불투수성 면적이 증가되었고 저지대 경사지의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토사 유출량이 많아져 홍수도달시간의 단축 등 홍수가능성의 잠재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재해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16년도 이후 총 피해액 규모 상위 10개년이 대부분 1980년대 이후에 발생하였다.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손해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자연재

해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에서 홍수 · 태풍 등과 같은 각종 자연재해발생시 지원되는 현행 정부의 복구비형태는 "이재민에 대한 생계비 구호지원", "공공시설복구비지원", "주택 · 농경지 등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 등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이재민 구호비와 공공시설복구비의 지원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 및 공공시설의 유지 · 관리 차원에서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사유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비지원은 과거 60, 70년대 영세 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현재와 같이 경제규모가 커지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정부에서 계속 사유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1]. 또한 복구비의 지원규모가 적정복구비 수준에 미흡한 관계로 재해시마다 피해주민들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요구가 빈발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의 경우 자발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복구비를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도덕성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발생되는 등 현행 정부의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진외국에서 기시행되고 있는 자연재해관련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자연재해보험제도의 개발 방안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화재, 자동차사고 등과 달리 시간적, 공간적 위험분산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한번의 사고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고 특히, 도덕적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커 일반 보험상품으로의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이하에서는 자연재해보험 상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도입방향과 내용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1. 담보하는 위험

일반적으로 담보하는 위험은 그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보험회사가 약속한 위험으로써 보험약관 및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자연재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주민(피보험자)과 보험회사(보험자) 쌍방이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보험적용 위험(재해)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체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명시된 「태풍 · 홍수 · 호우 · 폭풍 · 해일 · 폭설 · 가뭄 · 지진」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복구비의 일부(30~6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목적이 정부의 직접적인 복구비 지원정책을 민간자율의 보험제도로 전환하려는 것인 만큼, 자연재해보험의 담보위험(적용재해)은 현행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체계와 연계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규정된 자연재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자연재해보험이 홍수 · 태풍 · 호우 등 일부 재해만을 담보할 경우 담보에서 제외되는 타재해 발생시 정부의 복구비 지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재해의 종류에 따라 보험과 정부의 복구비 지원이 따로 이루어져 재해복구비 지원업무의 능률성 저하가 우려된다.

2.2 보험가입 대상 목적물

현행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체계와 복구비 지원대상 사유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대상 목적물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때 시설별 보험요율의 적정성, 손해평가의 객관성 확보 여부등 자연재해보험제도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정부의 복구비 지원대상 사유시설물 현황은

1) 사유시설물 피해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박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자연재해보험의 상품개발 및 운용방안 분석, 2000, 행정자치부 • 국립방재연구소)

주택(4종), 농업시설(63종), 어업시설(159종)등 총 226종의 시설물이다. 이에 대한 사유시설별 · 자치단체별 위험도 분석을 위해 최근 5년간('95~'99)의 보험관련 기초통계자료(시설별 보유량 피해량 재원별 복구비등)를 조사 · 분석한 결과 주택 · 농경지 · 농림 · 축산 · 어선 등 일부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사유시설의 경우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자연재해보험의 목적물 선정기준은 첫째, 사유시설별 · 자치단체별 위험도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의 신뢰성 둘째, 손해사정(피해평가)의 가능성 및 객관성 확보 셋째, 보험제도 운영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보험의 목적물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등 신뢰성있는 통계자료가 가능한 일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보험가입 대상 목적물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오랜동안 정부의 복구비 무상지원에 익숙한 국민정서상 보험제도 도입초기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역선택이 발생될 개연성이 크므로 우선 보험도입 효과가 큰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補償方法 및 水準

보상방법은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 초기의 보험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경험통계자료 부족 및 보험가액 평가기준의 불비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험시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수준은 현행 정부의 무상복구비 지원수준과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수준을 고려, 적정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상방법은 정액보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보험의 일반원리상 피해보상은 실손보상이 원칙이나 자연재해보험의 경우 대상시설이 다양하고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개별 시설물의 가액, 위치, 내구연수 등의 파악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보험도입 초기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정액보상」방법을 채택하되, 추후 보험관련 통계자료가 축적되고 보험가액 평가기준이 마련될 경우 실손보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입초기의 혼란과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한 보상수준은 현행정부의 복구비 지원수준의 150~20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재해보험 제도의 도입목적이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함에 있으나 보상수준과 보험료는 불가분의 관계로 보상수준이 높아질 경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실제 손해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현행 정부의 복구비 지원수준의 150%와 200% 범위내에서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保險加入形態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70%정도가 홍수 ·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서, 사유시설 피해의 대부분이 농 · 어촌지역에서 발생되고 있고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재해위험도가 낮은 도시지역 주민들이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역선택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역선택의 정도가 심하여 보험가입율이 저조할 경우 보험제도 자체의 성립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주민들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자연재해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므로 이를 의무보험화할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게 됨은 물론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 등 현실적으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단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행 복구비 지원부분을 보험료로 전환, 주민들의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보험에 가입하고 주민들은 보상수준의 확대부분(50~100%)에 대하여 임의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혼합형태가 바람직하다. 참고로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연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수해지역 주민은 49%가, 일반지역주민은 78%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2].

2) 자연재해보험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보고서(2000. 9),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5 保險料率 算出體系

산출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산출단위는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기본단위를 의미하므로 보험대상 개별시설을 단위로 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자연재해보험의 경우 요율산출단위를 개별시설로 할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226종)의 크기 및 위치, 가액, 피해규모 및 빈도 등 방대한 통계자료 집적관리가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국 또는 광역시 · 도를 요율산출단위로 할 경우 지역별 위험도의 편차를 반영하지 못하여 요율의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고 도시지역과 같은 저위험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험관련 통계자료의 분석이 가능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요율산출단위로 하여 위험도를 분석하고 보험요율을 산출하되 향후 홍수재해지도와 같은 객관적인 위험도 측정자료가 마련될 경우 단계적으로 개별시설별 요율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해년보의 경험데이터를 근거로 과거 10년 또는 20년간의 자치단체별 재해빈도, 규모 등에 따라 자치단체별 위험도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요율은 순보험료(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운영사업비)를 합한 영업보험료수준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순보험료는 재해통계에 기초한 위험보험료로서 과거 사유시설별 총수량 및 피해수량자료에 의해 산출된 피해율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 모집 및 유지관리, 손해사정등 보험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정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 부가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보험의 경우 자치단체의 역할 지원 및 운영주체 선정방법등에 따라 부가보험요율은 대체로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연재해보험 요율체계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차등화된 위험보험료를 반영하되, 위험보험료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운영사업비를 고려한 최저보험료를 적용(일반손해보험의 최저보험료 : 2,000원)할 필요가 있다.

2.6 保險料 負擔體系

자연재해보험제도는 현행 정부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체계를 민간의 보험제도로 전환하여, 피해보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방재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험료는 정부와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현행 복구비 지원범위내에서, 주민은 보상수준 확대 부분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한다.

3.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용 및 활성화 방안

자연재해보험제도의 특성을 감안, 준공영보험 형태에 맞는 관리체계 수립하고 보험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운영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강구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보험제도의 운용체계, 보험료의 집금, 사고조사 및 피해보상 등과 같은 운용방안과 보험가입율의 증대와 같은 활성화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1 運用方案

3.1.1 保險制度 運營體系

자연재해보험은 기존의 재해복구비지원체제를 정책성 보험제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반손해보험의 운용조직과 다른 점이 있다. 자연재해보험 역시 민영보험으로 상법과 보험업법에 의해 재물보험의 상품으로 운용되지 안으면 안되기 때문에 보험업감독규정 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자연재해보험상품에 대한 인가권은 금융감독원의 제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법규의 제 · 개정, 제도의 기획 및 조사,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운영주체는 별도의 보험사업 대행기관이 선정되어야 하며 손해보험회사는 위험인수, 사고조사 및 보험금 지급 등과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1.2 保險引受方法 및 運營主體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보험인수)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연재해보험은 재해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되는 거대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개별 보험회사별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담보력 확보차원에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다수의 국내 보험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이를 위한 협정체결 및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참여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운영주체는 자연재해보험은 피보험자와 보험가입대상 시설이 방대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여러기관의 참여가 불가피한 제도이며 보험료의 집금, 보상조직의 지휘감독, 유관기관간 전산시스템 구축 등 개별 보험회사가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전담 관리 · 조정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설치가 필요하다.

3.1.3 保險料 集金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국고)는 행정자치부에서 소요예산을 일괄적으로 확보하여 운영주체에 일괄 납부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지방비)는 자치단체별로 운영주체에 개별 납부하되, 행정자치부에서 지급된 국고지원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운영주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주민의 자발적 신고에 의한 보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자연재해보험의 특성(보험료 수준의 영세성, 가입대상 지역의 광범위성)을 고려 운영주체, 자치단체, 금융기관간 상호유기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 지로 · 온라인등을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3.1.4 事故調査 및 被害補償

사고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주요 참여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영주체는 첫째, 보험회사 보상조직의 운용계획 수립하고 둘째, 재해발생시 보험사 손해사정 인력계획의 수립 및 관리하고 셋째, 피해현황 및 피해액을 집계 (DB구축)하고, 넷째, 사고 신고 접수 및 주민에 대한 보험금 지급 창구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읍 · 면 · 동 단위에서 발생하는 사고신고를 접수(운영주체와 공동)하고 운용주체에 관련자료를 송부하고 손해사정업무를 협조한다. 손해보험회사는 사고내용의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험계약관계를 확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위와 같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손해사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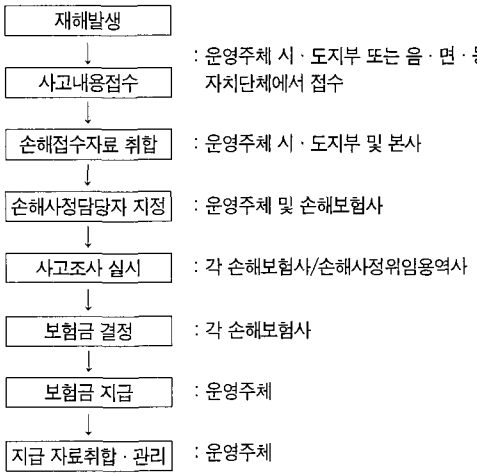

3.1.5 運營主體의 選定

자연재해보험은 한 번의 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거대위험을 담보하게 되므로, 담보력 확보차원에서 국내의 다수 보험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인수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자연재해보험을 공동인수 할 경우 보험료 집금, 보상조직 지휘운영, 전산망 구축 등 보험운영 전반을 총괄 관리할 별도의 운영주체의 설치가 필요하다.

운영주체의 주요 기능으로는 보험제도 시행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시행전에는 첫째, 참여주체별(운영주체, 정부, 손해보험사)역할의 정립, 보험약관의 작성 및 보험요율산정의 주관, 계약인수 및 손해사정의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한다. 둘째, 사업자간 인수비율,

사업비 정산, 보험료 배분방안 등을 검토하고 보험통계자료 집적 관리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각종 서식 및 양식을 작성한다. 셋째, 법령정비 및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방안을 수립한다.

반면, 시행후에는 첫째, 계약인수를 위해 보험가입 안내장 발송, 보험료 납부 안내 및 집금, 청약서 또는 보험가입 신청서 심사,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 증명서 발금, 보험료를 배분한다. 둘째, 재해발생시 손해사정업무의 총괄, 사고접수 및 계약사항의 확인,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등의 현장조사 협조, 보험금 지급 업무 등을 주관한다. 셋째, 보험통계자료의 집적 및 유지 · 관리, 보험의 목적물별 총수량 및 피해수량 등의 목적물별 D/B 구축, 제도 보완 및 연구 등을 위해 위험도에 따른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위험도 평가기법을 개발한다.

운영주체에 대한 운영경비 부담주체는 피보험자(정부+주민)이며 부담수준은 일반보험의 수준인 영업보험료의 30%이상에서 운영경비가 부담되나, 자연재해보험의 경우 준의무보험제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영업보험료의 20% 이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가입율, 보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부담수준에 대한 비용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3.2 保險加入率 增大方案

3.2.1 보험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납입보험료중 주민부담분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시설별 복구비 융자조건을 차등지원하거나 영농 · 영어 · 양축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조건 차등화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2 보험료 납부율 제고방안

주민으로 하여금 보험가입 대상시설별 리스트를 자진 신고케 하고 이에 대한 보험가입 안내장을 운용주체가 발송하여 보험료 납부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2.3 保險制度 弘報

언론매체 등을 통한 보험제도 홍보를 위해 TV, 신문 등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시행계획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토록 적극 계도하고 보험제도 시행 2~3개월전 부터는 집중 홍보 전개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험제도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보험제도 도입초기 피해신고 접수, 손해사정 등 일부 보험업무 지원이 불가피하고 지역여론 형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운영주체에 의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방송광고, 신문광고, 인테넷 등을 통한 홍보, 개별주민을 대상으로 보험제도 안내장 배포, 보험제도 세부 운영방안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들 수 있다.

4. 결론 및 관련 기관별 역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재해보험은 우리나라가 선진 방재국가로 도약하는 단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재해예방 및 보상제도이다. 즉,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자력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호대책, 관련법의 제정, 댐건설 등의 구조적인 치수대책과 더불어 자연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보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국내보험환경에 적합한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손보시장에서도 매년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는가 하면, 많은 상품들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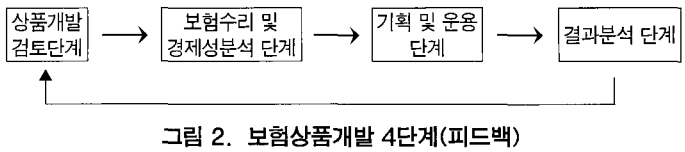

그림 2. 보험상품개발 4단계(피드백)

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새로운 보험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험상품개발시스템에 의해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금번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보험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보험상품개발 4단계[3]에 따라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위와 같은 보험상품개발 4단계는 주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민영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자연재해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의 형태로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품개발단계를 기초로 자연재해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관련당사자들의 역할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재해보험의 운영과 관련된 당사자들로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될 정부(지자체), 보험인수자인 손해보험회사, 그리고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보험개발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관련기관별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부(지자체)

자연재해보험의 공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공영보험의 형태로 도입되는 경우, 그 관리주체는 정부가 되므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거대손해 발생시 정부의 보험금 지급보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정부의 주요 역할로는 첫째, 의무보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해 의무보험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현행 복구비를 보험료로 충당함에 따른 주민의 반발감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정수준의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보험료수준을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셋째, 정부의 지원형태가 민영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상되는 다수민원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넷째, 우리 국민의 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도를 감안하여 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민의 연대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나.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을 운영하는 직접 당사자로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자연재해보험에 있어서 보험회사는 수익개념보다는 사회공익적 차원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된다. 이를 위해 첫째, 자연재해발생율은 연도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보험료수준도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결과 남는 잉여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금으로 적립, 이상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둘째, 자연재해는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최근들어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홍수지도와 같은 위험도 분석자료의 작성이 필수적이다. 물론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어 제작이 어렵겠지만,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제작·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독일의 알리안츠보험회사에서 독일전역을 커버하는 홍수지도를 약 2년간에 걸쳐 작성한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보험예방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즉,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는 예방활동 또한 중요하다.

다. 요율산출기관

자연재해보험은 전국을 대상으로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요율산출기관은 적정한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도

3) 손해보험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관한 연구(보험개발원, 1999.3)

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첫째, 과거 경험통계를 집적해 나가기 위해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DB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원활한 보험의 운영을 위해 전산집적을 통한 보험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정확한 손익분석을 통해 적정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요율검증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즉, 할인 · 할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차별화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 당사자별 역할은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이들 역할이 균형을 이룰 때 효율적인 보험운영이 가능하고 동 보험제도가 자연재해대비책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보험제도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다. 즉, 정부 · 손해보험회사 · 요율산출기관간의 역할이 삼위일체를 이룰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 기관별로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하루 빨리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